〈잉여금 배당 규약〉 2024 년 03 월 12 일 제정

제 1 조(목적)

이 규약은 잉여금배당의 방법, 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조합의 배당에 관하여는 다른 규약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 3조(용어의 정의)

-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"납입출자금"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을 말한다.
- 2. "이용실적"이라 함은 조합 발전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. 여기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조합 유형, 조합원 유형,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4 조(배당의 종류)

조합의 배당의 종류 및 배당률은 각 호와 같다.

- 1. 납입출자금 배당: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다.
- 2. 이용실적 배당: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5 조(배당기준일)

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.

제 6 조(배당액의 결정기준)

-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(당기손실금을 말한다)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.
- ② 협동조합이 제 1 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,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배당의 순서는 이용실적배당, 납입출자금배당 순으로 지급한다.
- ⑤ 제 4 항에 따라 배당을 하고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.

제 7 조(배당방법)

- ① 배당은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확정된 배당금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이 제출한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. 다만, 조합원이 요청할경우 본인의 통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.
- ③ 배당이 확정되었으나 조합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증자하는 회전출자도 가능하다.

제 8 조(배당대상자)

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연도 말의 출자자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 한다.

제 9 조(출자금배당 산출방법)

- ① 조합원 개인이 납부한 출자좌수를 전체 총출자좌수로 나누어 조합원별 납입출자비율을 계산한다.
- ② 납입출자금배당으로 가능한 금액에 조합원 개인의 납입출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

제 10 조(이용실적배당 산출방법)

- ① 이용실적배당은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의 참여도를 정량화한 것으로 배당의 기준이 된다.
- ② 이용실적을 부여하는 원칙은 평등성, 형평성,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다.

평등성에 따라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점수가 누적된다.

형평성에 따라 참여 횟수에 따른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된다.

책임성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을 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③ 이용실적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정관에 정한 주요사업
 - 2. 정관에 정한 필수사업
 - 3. 주요사업 및 필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사업
- ④ 이용실적(기여도)에 따른 계산은 당해연도말에 합산하여 조합원에게 개별 공지한다.
- ⑤ 조합은 필요시 조합원에게 이용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도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 11 조(배당금의 지급)

배당금의 지급은 총회 의결 후, 각 조합원에게 지급한다.

제 12 조(배당금 지급의무 소멸)

- ① 배당금 지급개시일로부터 만 5 년이 경과할 때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.
- ②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은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.

제 13 조(배당금의 상계)

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.

제 14 조(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)

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.